「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:**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:** 구 미 시 장
3. **회부일자:**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:**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**제안 설명자: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**
2. **제안이유**

가.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

나.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

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
2) 예 산 액 : 1,800백만원(2027년도 기준 600백만원)

3) 사업내용 : 사업주·노동자 명의로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,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월 임차료 일부 지원

4) 지원금액 :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 한도(월세 80% 이내 지원)

※ 조건별 차등 지급(중소기업 최대 25만원, 중견기업 최대 10만원 등)

나. 추진근거

1)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
2)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5조

3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16조

다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

라. 위탁조건

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2) 기업체 관련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

※ 기업체 지원 사업 : 기업체 환경개선 사업, 일자리 창출 사업, 기업체 교육사업 등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2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
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※ 부서의견

가.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체 지원사업 등에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근로자의 주거공간 문제 해소를 통한 관내 전입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시행 필요.

다.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시 기숙사 제공에 대해 타 지역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기업체의 참여율 높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1)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
2)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5조

3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 비용추계서

다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: 2026년 제4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총무과-29099(2026.9.1.)호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 : 안건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동의안은

-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,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관내 중소·중견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.

-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3년 173명, 24년 240명, 25년 282명 등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노동자 전입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고 있어 관련 기업체 지원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생　　략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사업 목적상 수혜 대상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,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홍보비 반영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.

- 단순한 임차지원 사업임을 고려할 때, 직영 운영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